전남대학교 제3대 대학평의원회
제7차 본회의 회의록

○ 일　시 : 2022년 5월 10일(화) 10:00 ~ 5월 12일(목) 12:00
○ 심　의 : 서면심의
○ 회　수 : 18명
[한은미, 지철열, 최수일, 김민용, 김재기, 이경환, 이용식, 정채용, 황인남, 문기석, 박중렬, 김용구, 전병용, 한선미, 정원태, 김현지, 이영주, 문방진]
※미응답: 김영준, 강도희

1. 개 회
- 서면심의로 진행(서면심의서 회수 18명)되었으며, 성원이 됨

2. 전차회의록 검토 및 확인
- 제6차 본회의 회의록(2022.03.28.)을 검토하고, 수정 없이 원안으로 확정함

3. 보고사항
- '2022~2025 전남대학교 발전계획 최종보고'가 진행됨

4. 심의안건 : 1건

1) 전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(안)

가. 개정 이유
- 제43조 조항 제목과 그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비하고,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(교과목) 운영 등 학점 교류 활성화에 따라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을 학기(학년) 단위 이외 교과목 단위까지 포함하고자 함
-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-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관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등 특례에 따른 국내외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- 우리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교육부 승인사항 및 2023학년도 계약학과 학생정원 반영

나. 주요내용

- 제43조 조항 제목을 내용과 일치시켜 “대학간의 학술교류 및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”으로 수정하고,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(교과목)* 운영 등 학점 교류 활성화에 따라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을 학기(학년) 단위 이외 교과목 단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

  *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(교과목) 운영 현황: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iU-GJ융합전공,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, 거점국립대학 원격수업(KNU-9), 서해안권 거점 국립대학 공동화상강의, 전남대-조선대 공동 교양교과목 운영, 국내 협력대학 공동강의 등

-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(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) 개정 사항을 반영
- 고등교육특화지역 지정 등 특례에 따른 국내외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범위 신설
- [별표1] 「2023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」 승인사항 반영
- [별표5] 「2023학년도 계약학과 학생 정원」반영
- 모집단위 신설에 따른 [별표6] 「학사 학위 종별」 반영

다.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: **규정심의위원회 심의(안)을 수정하여 통과**

※ 운영위원회 수정사항

- 제43조(대학간의 학술교류 및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) 띄어쓰기 및 문구를 수정함

현행	일부개정(안)	운영위원회 수정(안)
제43조(대학간의 학술교류) ①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에 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와 타대학교간 학생교류학점 상호인정규정과 전남대학교와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·복수학위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전남대학교와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로 정한다.	제43조(대학간의 학술교류 및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) ① 이 대학교 학생이 국내외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거나 타 대학 학생이 이 대학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와 타대학교간 학생교류학점 상호인정규정과 전남대학교와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·복수학위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전남대학교와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로 정한다.	제43조(대학 간의 학술교류 및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) ① 이 대학교 학생이 국내외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거나 타 대학 학생이 이 대학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와 타 대학교 간 학생교류학점 상호인정규정과 전남대학교와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·복수학위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전남대학교와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로 정한다.
② 국내외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와 타대학교간 학생교류학점 상호인정규정에 따로 정한다.	② 국내외 타 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국외 타 대학과의 공동·복수학위과정 이수자의 경우 국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4분의 3 범위	② <개정(안)과 같음>

현행	일부개정(안)	운영위원회 수정(안)
	내에서, 외국대학이 운영한 이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.	
③ <신설>	③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등 특례에 따른 국내외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특례기간에 한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	③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등의 특례에 따른 국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특례기간에 한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라. 본회의 심의결과 : 운영위원회 심의(안)대로 통과. 다만 서면심의서에 의견이 있음

※ 심의 의견[1)]

본 심의 건에 관하여 부가의견이 있어 심의자료에 더하여 제안사항을 공론합니다. 본 "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" 건에 관하여 학기 단위 외 교과목단위 포함에 관한 사항에 동의합니다. 다만 포괄적으로 타 대학 취득학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"이수영역" 인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. 특히 교양과목의 경우 편입생이나 학술교류를 통해 타 대학학점 인정 신청을 하는 본교학생의 경우 영역인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, 막연한 학점인정은 의미가 매우 낮아짐이 당연한 현실입니다. 영역인정의 절차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나 실제적으로 각 단과대학의 교무회의에서 신청된 학점 등에 대한 세부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나, 학칙이 단정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으니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학칙수정을 본부에 권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.

(2) 자문안건 : 없었음
(3) 토의안건 : 없었음

5. 기타 사항

1) 서면심의서 [의견]란에 평의원이 개진한 의견으로 원문 그대로 반영함

6. 폐회

작성 : 간 사 최 수 일 (인)

확인 : 의 장 한 은 미 (인)